

## 서비스무역규범의 다자간 논의 동향 고찰

정희진<sup>1</sup>, 장은희<sup>2\*</sup>

<sup>1</sup>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sup>2</sup>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조교수

### A Study on the Multilateral Discussion Trends of Service Trade Agreement

Hee-Jin Jeong<sup>1</sup>, Eun-Hee Jang<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Economics, Hanshin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Distribution and Trade, Woosuk University

**요약**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규범, 서비스무역장벽, GATS, TISA

**Abstract** Today, due to the serviceization of the economy, volume and position Global trade in Services have gradually increased. Stable and fair trade can be achieved through solid international trade law. Multilateral discussions on service trade agreement have been stagnant, but have recently shown considerable outcome. Service trade agreement(GATS) deal with various service trade barriers in member countries that hinder free trade in services. Recently, a group of WTO members have established the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he agreement aims to ensure that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s well as technical standard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services trad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ype and statistics of service trade barriers that affect actual service transactions. At the same time, It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multilateral service trade agreement for resolving service trade barriers.

**Key Words** : Service Trade, Service Trade Agreement, Service Trade Barriers, GATS, TISA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Jang(berjaya@woosuk.ac.kr)

Received February 14, 2022

Accepted April 20, 2022

Revised March 5,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 1. 서론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sup>1)</sup>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나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9), 유럽재정위기(2012) 그리고 최근 COVID-19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된 때에도 증가세를 유지해왔다[1].

이처럼 새로운 시장에서 기업은 혁신 서비스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정부는 국가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무역환경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국제통상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개방 논의는 다자간 차원의 WTO 협정과 지역간 차원의 FTA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규범의 주요 협상 대상은 물품 중심이었으나 오늘날 서비스와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거래를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완화 및 철폐하기 위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치 등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적인 서비스무역질서를 갖추는 것이다. 한편 무형재는 물품과 달리 무역장벽의 형태 및 실패 파악이 어렵고 무엇보다 국가 간 산업 발전 수준 차이가 상당하여 규범의 논의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GATS는 WTO의 출범과 함께 채택되어 서비스 교역을 관장해왔으나 광범위한 예외 규정과 다수의 적용 제외 사항을 두고 있어 국제통상법으로서 적용의 보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GATS 채택 후 개선을 위한 작업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WTO 차원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가간 협상」이 타결되었다. 동 협상은 서비스무역장벽이 되는 ‘국내 규제에 관한 통일 규범’을 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비록 WTO 전체 회원국이 참여한 진정한 다자간 협상의 결실은 아니지만 동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전세계 서비스교역의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로소 이들 국가는 서비스업 관련 국내규제를 제정 및 시행함에 있어 글로벌 통일 규범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법 위에 실현 가능한 바, GATT가 오랜 시간 상품무역의 자유로운 교역환경 조성 및 성장에 기여한 것처럼 GATS 역시 서비스무역에 보편적인 국제통상규범으로 역할하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선행연구는 GATS 조문 해석 및 관련 판례 검토를 기초로 최근에는 FTA 서비스협정 조문의 비교·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왔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정제기에 있던 다자간 논의의 진전에 중요성을 두고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서비스무역장벽

### 2.1. 서비스무역장벽 개요

서비스무역이란 재화를 제외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의미한다[1]. 동 거래에 적용되는 서비스무역규범은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에 영향을 주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화 및 철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상, 방법, 시기 등을 합의한 협정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협정의 적용 대상은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따라서 국가 간 서비스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개별국들의 제반 조치(measure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sup>2)</sup> 일관되고 공통된 서비스의 정의가 어려운 것처럼 서비스무역 장벽의 파악과 분류 역시 제한적이다. 예컨대, 서비스는 무역장벽 중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통관절차를 수반하는 거래 대상에 부과되는 것으로 물품의 고유한 무역장벽이며, 서비스는 수량제한이나 국내규제와 같은 비정형화된, 선별적인,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제한 조치로써 작동할 것이기에 그 파악과 규제에 한계가 있다. 또한 물품거래는 반드시 국가간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므로 객체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무역장벽을 파악할 수 있으나 다양한 방식(4가지 Mode)으로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수출입에는 사람, 자본 등의 이동이 수반된

1) OECD 회원국 기준 GDP의 70%(17년), 고용의 73%(19년)를 서비스산업이 차지하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4%(20년)이다.

2) 비가시성, 비촉지성, 비영속성(표준성 및 변동성 측면)

다는 점에서 생산요소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비스 거래방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odes of Service Delivery in International Trade(GATS)**

Mode	Definition	ex.
① Cross-border supply	when services flow from the territory of one WTO member into another.	banking or architectural services transmitted via telecommunications or mail
② Consumption abroad	when a person consumes a service in another member's territory.	tourist or patient
③ Commercial presence	when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establishes a commercial presence in another member's territory to provide a service.	domestic subsidiaries of foreign insurance companies or hotel chains
④ Movement of natural persons	when individuals of one WTO member temporarily enter the territory of another to supply a service.	accountants, doctors or teachers

서비스무역규범(GATS)의 이해에 4가지 서비스거래 방식이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시장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거래 방식별로 시장개방의 정도와 시기 등을 달리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즉, 하나의 서비스도 거래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무역장벽의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2. 서비스무역장벽의 주요 형태**

서비스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는 ①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GATS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와 다자간 규범과는 별개로 ②개별 국내법규를 통해 제한하는 조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2.1. GATS 의무 규정 위반**

GATS 의무 규정은 일반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특정 이행)로 구분된다[3]. 전자는 모든 회원국과 양허 서비스 분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후자는 개별 회원국들이 특정 서비스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를 규정한다. GATS의 일반적 의무는 최혜국대우와 투명성 원칙이며 구체적 의무는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보장원칙이다. 비록 GATS는 서비스 자체의 특성상 원칙의 적용에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개방의 수준 역시 제한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서비스무역규범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명백한 무역장벽조치이다. 한편 실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주된 무역장벽은 개별 국가(들)의 국내규제 조치이다[4].

**2.2.2. 개별 국가의 국내규제 조치**

국내규제는 각국이 국내법규를 통하여 외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 또는 차별대우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서비스산업별로 자격요건이나 면허, 기술 표준 등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 심사 절차와 같은 일반 행정 전반에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규정들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 장벽의 유형에 관하여 GATS 규정에서도 “서비스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에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 밖에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GATS 제28조)”고 정의하여 특정한 형태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5]. 즉, GATS는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며, 서비스산업을 규제하는 회원국의 어떤 조치라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GATS가 적용되지 않는다[6]. 관련하여 WTO에서 분류하는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는 다음 Table 2와 같다[7].

**Table 2. Service Trade Barriers(WTO)**

	Breach of GATS obligations		domestic regulation measures
	Market Access limitations	National Treatment limitations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miting the number of service suppliers</li> <li>✓ Limiting the total amount or asset of service trade</li> <li>✓ Limiting the number of service branches or total output</li> <li>✓ Limiting the number of nature person related to service</li> <li>✓ Limiting the form of corporations or joint ventures</li> <li>✓ Limiting foreign shar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crimination in law and in fact against the same type of service and service suppli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alification requirement</li> <li>✓ Technical standards</li> <li>✓ Licensing requirement</li> </ul>

2.3. 서비스무역장벽의 동향

2.3.1. OECD의 STRI 개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정도는 서비스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의 실체와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무역장벽은 개별 국가 차원의 국내법규의 시행과 같이 서로 다른 규제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실체의 정의 및 정확한 정량적 평가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8]. 그럼에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OECD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규제에 관한 국제비교의 척도로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고안하여 2014년 발표하였다.

STRI는 총 48개국을 대상으로 22개 서비스 부문별로 규제 조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각각 0-1 사이의 숫자로 지수화하여 서비스무역 자유화 정도를 측정한다. 1에 가까울수록 무역장벽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STRI 조사 대상 국가와 서비스 분야는 각각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3. OECD STRI Countries(2020)

Countries: 48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ntra-EE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exico, Malaysi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ussian Federation, Slovak Republic,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Table 4. Service Sectors in OECD STRI

Service Sector(22)	
Digital network(5)	Broadcasting Computer services Motion pictures Sound recording Telecommunication
Transport and distribution supply chain(10)	Air transport Courier services Distribution services Logistics cargo-handling Logistics customs brokerage Logistics freight forwarding Logistics storage and warehouse Maritime transport Rail freight transport Road freight transport

Service Sector(22)	
Market bridging and supporting services(4)	Accounting services Commercial banking Insurance Legal services
Physical infrastructure services(3)	Architecture services Construction Engineering services

다음으로 OECD는 서비스무역 관련 규제조치 DB 항목 선정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해 각 서비스부문별 특성 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및 종합지수 작성 방법에 관한 문헌조사를 시행하며 집계된 DB는 국가별 자체 확인 및 회원국 간 상호 검토를 거친다. 서비스부문의 규제 조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분야(policy area, PA)로 분류된다.

- PA I: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 PA II: 인력이동제한
- PA III: 차별적조치와 국제표준
- PA IV: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
- PA V: 규제투명성 및 기타 행정요건

2.3.2. OECD의 STRI 동향[9]

2019년 대비 2020년에 서비스무역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규제 강화 조치(Trade Restrictions)가 가속화되었으며, 자유화 조치(Trade Liberalisations)는 배송, 상업금융, 보험에서의 진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규제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컴퓨터서비스, 상업금융, 방송이다. STRI 서비스분야별 무역장벽 동향은 Fig. 1와 같다.



Fig. 1. Changes in the STRIs per sector, 2019-2020.

모든 서비스 영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규제 조치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와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조건 변경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각 국가는 공공 보건, 경제 안정을 위한 일시적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예정된 기존의 규제조치 역시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2020년에 Mode 3(상업적 주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심사 조건과 절차에 신규 규제 도입, 외국인의 지분, 법률 형식, 이사회와 경영진을 통한 회사 지배력과 관련한 규제 변경에 기인한다.

국가별로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STRI가 낮아진 국가는 브라질, 중국, 아이슬란드이고 2020년 기준 평균 STRI 지수값이 낮은 국가, 즉 자유화 수준이 높은 국가는 체코, 라트비아, 네덜란드, 일본, 라투아니아, 영국,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이다. 2020년 국가별 STRI 지수는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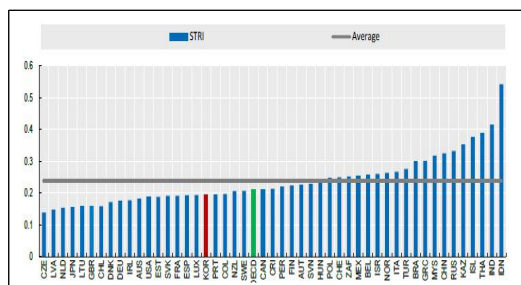


Fig. 2. Average STRI across countries, 2020.

우리나라의 STRI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OECD 평균보다도 낮아 서비스무역에 개방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

#### 3.1. WTO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GATS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간 규범 논의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경제질서 재건을 위한 국제무역 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ITO 헌장(하나바 헌장, 1945년)에서부터 이다. 동 헌장 설립 초안에는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운송, 통신, 보험 그리고 상업금융 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는 국제무역의 실질적인 요

소이며,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 의한 제한적 영업 관행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하나바헌장 제53.1조)"고 명시함으로써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저해하는 조치에 관하여 국제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ITO 헌장은 국제 회의 역사상 그 어떤 경제협상보다도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괄하여 해결하고자 한 협상이면서도[10] 결국 참가국들의 비준을 얻지 못해 무산되고 초안의 일부였던 GATT(1947년)만이 동의를 얻어 채택됨으로써 세계무역질서는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GATS가 탄생하기까지 서비스무역은 개별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아 왔다.

GATT 체제 출범 이후에도 다자간 서비스무역 규범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의미 있는 시도의 하나는 GATT의 제7차 활동인 동경라운드(Tokyo Round)이다. 동경라운드 협상 일부 내용에 상품무역의 보조 수단으로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코드(Code, 규약)에는 상품공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경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 자체를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시도는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11].

이후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논의는 1986년에 시작된 GATT의 제8차 회의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에서 본격화되었다[6]. 그 결과 1993년 12월 15일 서비스는 농산물과 함께 UR 최종협정문에 포함되어 시장개방의 시작을 알렸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정으로 서비스무역을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간 무역규범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GATS는 서비스 산업의 안정적인 무역 확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협정의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개방화 수준을 합의함에 있어서 국가 간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정도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로 상당히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GATS는 GATT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비스협상은 GATS에 의거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로 불린다[12]. 이에 WTO의 첫 공식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 이전에 이미 WTO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실제 본격적인 협상은 DDA 발족과 함께 개시되었다. 한편 WTO의 회의론을 불러올 정도로 DDA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비스무역 개방화 논의 역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sup>3)</sup>[13].

### 3.2. WTO 복수국간 서비스무역규범: TISA

21세기 서비스무역의 성장과 그에 상응하는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시점에도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장기간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이 추진되었다. WTO 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원칙이지만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개별 협정에 비준한 참가국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복수국간무역협정을 두고 있다.<sup>4)</sup> TISA의 목적은 서비스무역 시장개방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은 높여 서비스무역규범을 개선하는 것이다[11].

협상은 지난 1999년부터 서비스무역 국내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제11차 각료회의(2017.12)에서 이를 복수국간 협상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WTO 협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2021년 미국 참여를 계기로 협상 진전이 가시화되었고 이에 따라 잔여 쟁점이 사실상 모두 해소되어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WTO는 2021.12.2(목) 제네바 현지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Service Domestic Regulation)」 타결을 선언하였다[14]. 동 협상은 GATS 제6.4조<sup>5)</sup> 근거하여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국내 절차가 규제화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동 협상은 서비스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

의 국내절차적 측면에서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참가국은 WTO의 총 16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67개국이 참여하였고 이들이 전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 정도로 추산된다[15].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 관련 국내규제(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의 ① 투명성 향상, ②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③ 규제질 향상이다[16]. 구체적 합의 사항은 Table 5와 같다.

첫째, 서비스 관련 국내규제조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주요 합의 사항은 해외 서비스 공급자의 정보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관련 정보공시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수립 등이다.

둘째, 국내규제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에 관한 세부 항목은 주로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신청과 승인 등의 행정절차에 관련된 것이다. 신청서 처리 일정 명시, 신청서 처리 현황 통지, 신청자의 미비 사항 수정 기회 부여, 신청서 부결 사유 통지 및 재신청 기회 보장, 일단 허가된 경우 효력 발휘에 부당한 지연 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질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항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신청 수수료 책정,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기술표준 제정, 단일 온라인 포털에 관련 정보 제공, 전자 제출 시스템 제공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상 타결 선언에 따라 참여국은 타결 선언 후 1년 이내에 협상 내용을 국내 절차에 반영하였음을 WTO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2022년 12월 이후에는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5. The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TRANSPAR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ublish and make available information required to comply with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including through electronic means</li> <li>• Establish appropriate mechanisms for responding to enquiries from service suppliers</li> <li>• Engage stakeholders by publishing proposed laws and regulations, providing opportunity for comments from interested persons, and considering comments received.</li> </ul>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tablish indicative timeframes for processing applications</li> <li>• Process applications in a timely manner</li> <li>•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applications</li> </ul>

3) DDA에서 진행된 서비스 분야 논의에 관하여는 인용 논문 참고.

4) WTO 설립 당시에는 민간항공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4가지가 있었으며 이후 정보기술협정, 복수국간서비스협정, 환경상품협정이 추가되었다.

5)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조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Continued)

**Table 5. The Discipline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ow applicants to correct minor deficiencies in incomplete applications and identify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li> <li>• Inform applicants of reasons for rejection of applications and allow resubmission</li> <li>• Allow authorization once granted to enter into effect without undue delay</li> <li>• Allow reasonable time between pub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date of required compliance by service suppliers</li> <li>• Hold examinations at reasonably frequent intervals</li> </ul>
REGULATORY QUALITY AND FACIL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quire applicants to approach only one competent authority to obtain authorization</li> <li>• Permit submission of applications at any time throughout the year, or at least, allow reasonable periods of time for submission</li> <li>• Accept electronic applications and authenticated copies of documents</li> <li>• Ensure that authorization fees are reasonable, transparent, and do not in themselves restrict the supply of service</li> <li>• Support professional bodies wishing to establish dialogues on issues relating to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li> <li>• Ensure that competent authorities reach their decisions in a manner independent from services suppliers</li> <li>• Consolidate relevant information on a single online dedicated portal</li> <li>• Develop technical standards through open and transparent processes</li> <li>• Base measures relating to authorization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li> <li>• Ensure that procedures are impartial, adequate and do not unjustifiably prevent fulfilment of authorization requirements</li> <li>• Ensure that authorization measures do not discriminate between men and women</li> </ul>

#### 4. 결론

그동안 서비스업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별 국내규제 조치에 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불투명한 규제, 복잡한 절차 등이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전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전문 자격과 면허가 필요한데, 외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자격 및 면허 취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자체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무역장벽 완화의 의미는 서비스무역에 제한이 되는 특정 조치를 단지 철폐하는 것이 아닌 필요요건의 취득을 위한 국내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간규범은 1995년 출범한 GATS 수준이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가운데 지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간 자율적인 협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다시금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안정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비스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여 서비스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규범의 합의는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즉, 이번 협상이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고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진전의 한 과정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협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협상 대부분의 규정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낮다. 하지만 GATT가 그러했듯 완전한 구속력이 없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이행과 준수이다. 이것이 실현될 때 이후 한층 더 발전된 서비스무역규범의 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 협상 타결은 既개방된 서비스분야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 합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자간무역규범으로써 적용의 보편화·일반화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시장 개방의 원칙과 범위의 적정 수준의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점차 넓혀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지역주의 차원의 논의와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달리 지역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왔다. 다자간 서비스규범의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양자간 또는 수자간 협정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차원의 점진적인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을 완성해나감에 있어서 기존의 지역간 협정의 개방 범위와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Bank of Korea. (2020). *Trend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Global Service Trade*. Seoul : BOK

[2] J. S. Go. (2003). *Basic Structure of WTO*

Agreement on Services.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4(1), 13-41.

- [3] G. A. Choi & I. S. Pak. (2020). Comparative Analysis of GATS and Services Provisions in Korea's FTA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88, 149-169.  
DOI : 10.35980/KRICAL.2020.12.88.149
- [4] J. K. Lee. (2017). A Critical Review of Criteria for Domestic Regulation in GAT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ecessity" Test in GATS Article VI.4. *Dong-A Journal of IBT Law*, 20, 133-149.
- [5] J. Y. Lee. (2012). A Research on the Activation of Service Trade in FT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4(3), 403-424.  
DOI : 10.15798/kaici.14.3.201209.403
- [6] N. H. Park. (2018). *International economic law*. Seoul : Pakyoungsa.
- [7] J. C. Moom. (2016). *Sectoral Analysis of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 Indices(STRI) and Its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8] H. K. Sung. (2009). *Mesuring the Barriers for Service Trad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9] OECD. (2021).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olicy Trends up to 2021*. OECD (Online). <https://www.oecd.org>
- [10] D. Y. Park & Y. H. Lee. (2019). *A Charter for World Trad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11] H. H. Kwon. (2015). Understanding on the Negotiations of Trade in Service Agreement. *Ajou Law Review*, 9(2), 177-205.  
DOI : 10.21589/ajlaw.2015.9.2.177
- [1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TA KOREA. <http://www.fta.go.kr>
- [13] H. S. Choi. (2015). A Study on the WTO Negotiations of Trade in Services. *Dong-A law Review*, 69, 203-230.
- [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12.03.). *WTO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Declar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Online).. <https://eiec.kdi.re.kr>
- [15] S. K. Park. (2021.12.09). *WTO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Conclude*. News Insight (Online). <https://www.ifs.or.kr>
- [16] WTO. (2021).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Rationale and Content, Potential Economic*

*Benefits, and Increasing Prevalence in Trade Agreements*. WTO (Online). <https://www.wto.org>

### 정 희 진(Hee-Jin Jeong)

[정회원]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경제학 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무역상무, 국제거래법, 국제통상, 기술무역
- E-Mail : heejin1209@hs.ac.kr

### 장 은 희(Eun-Hee Jang)

[정회원]



- 201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경제학 박사)
- 2020년 2월 ~ 현재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영, 무역
- E-Mail : berjaya@woosuk.ac.kr